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6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4년 5월 31일
- 나. 발 의 자: 전승관 의원 외 3명
- 다. 회부일자: 2024년 6월 11일
- 라. 상정일자: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4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전승관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~ 안 제2조)
 -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규정함(안 제3조 ~ 안 제4조)
 -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(안 제5조 ~ 안 제6조)
 - 우선주차구역의 이용과 위반차량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

(안 제7조 ~ 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○ 본 조례안은

-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4조(적용 범위)에서는 본 조례안에 적용 대상인 국가유공자 등을 애국지사·국가유공자·보훈보상대상자·참전유공자·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·5·18민주유공자·특수임무유공자·상이등급 판정자로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5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)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을 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, 구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, 그 밖에 주차장에 관하여는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6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)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으로,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대 이상인 경우에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으며, 고령인 국가유공자 등을 배려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였고,
- 안 제7조(우선주차구역의 이용)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시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도록 하였으며,

- 안 제8조(위반차량 조치)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을 시에 다른 장소에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○ 검토 결과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이루도록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.
-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구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위문금, 보훈예우수당, 사망 위로금,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.
- 한편,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가유공자 등의 평균 나이는 71.2세로 고령자임에 따라 본 조례안은 평균나이 71세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,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보훈·예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.
- 현재 전국적으로 67개 자치구에서, 서울시에서는 9개의 자치구가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음.
- 한편,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을 “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대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”하도록 규정하였는데, 이는 우리 구의 주차난 문제와 서울시 타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정히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.
- 따라서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전승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6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5. .

발 의 자: 전승관·이성수·유승용·
이순우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규정함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다.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
(안 제5조 ~ 안 제6조)
- 라. 우선주차구역의 이용과 위반차량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
(안 제7조 ~ 안 제8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주차장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 6. 1. ~ 2024. 6. 5.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(이하 “우선주차구역”이라 한다)”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.

1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
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
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

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
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본인

7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

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

제5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

2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

② 구청장은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6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)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대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. 다만,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2.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,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

보된 장소에 설치한다.

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을 표시하고,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.

제7조(우선주차구역의 이용)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(위반차량 조치)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